

법인세 납세의무

※ 법인세 계산구조

결산서당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 가산세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 세액

1. 납세의무의 범위

(1) 법인세 개요

법인세란 법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법인세는 기간이익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회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회사와 같은 법인이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소득발생원천별 과세소득의 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다.

한편, 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법인 등인 경우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법인은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

(가) 영리법인

①개념

영리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단법인으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타 법인으로 구성된다.

※설립근거가 특별법이라도 구성원이 법인의 재산에 대해 지분을 갖고 잉여금을 배분받으면 영리법인이다.

②납세의무의 범위

영리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다.

(나) 비영리법인

1) 의의

비영리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①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술, 종교단체 등과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의제비영리법인, ④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한 비영리법인 등이 있다.

2)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

단순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3) 납세의무의 범위

비영리법인의 경우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한편, 비영리법인은 해산한 경우 그 잔여재산을 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하지 않으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가 없다.

(다) 비영리법인의 구분

①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 등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을 말한다.

② 의제비영리법인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⑥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③ 승인의제법인

사단·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사단·재단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사단·재단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 등은 법인으로 취급한다.

④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중 종교의 보급 등에 기여하는 사업,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에 의한 각급 학교, 사회복지사업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 법인 등이 법인세법에 열거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을 둔 법인을 외국법인이라고 하고, 영리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비영리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한다.

※협동조합

1. 정의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

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자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에는 ①사업자 협동조합, ②소비자 협동조합, ③직원협동조합, ④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⑤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영리법인인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협동조합의 법인 등 세금 문제

가.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등 영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와 동일한 납세의무가 있다.

한편, 협동조합은 결산시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나. 사회적 협동 조합

사회적 협동 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일정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매년 1.25, 7.25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적 협동조합은 결산시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법인세 과세단위

법인세는 법인단위로 과세한다. 그러므로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둔 경우에 사업장마다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단위로 법

인세를 과세한다. 한편, 주식소유에 의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으로 단일조직으로 보고 개별법인의 손익 및 세액을 집단으로 집약·통산하여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가 있다. 즉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법인세 과세단위로 보아 각 법인의 소득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해당 법인은 개별납세제도 또는 연결납세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의 소득은 ①각 사업연도 소득, ②토지 등 양도소득, ③미환류소득, ④청산소득의 4가지 종류가 있다.

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의 원칙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구분하는 일정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으로 하며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소득금액 계산 과정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계산과정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항목의 금액을 가산하고, 이 금액에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법인의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수익의 금액이면 소득의 종류 또는 소득원천을 가리지 않고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자산의 평가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과 자산·부채의 평가가 필요하다.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재고자산의 평가, 유가증권의 평가, 외화자산의 평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밖에 자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의한다.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평가하는데 이는 과세소득의 조작 방지, 평가의 획일성, 과세소득 산정에서 필요한 미실현 손익의 제거 등에 그 취지가 있다.

(3) 세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

한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의 범위로는 국제회계기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준칙,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등이 있다.

(4)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법인의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수익의 금액이면 소득의 종류 또는 소득원천을 가리지 않고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5)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사교·기타 영리 아닌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이익이나 잔여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란 일정한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한편,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12455 판결).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 및 신고·납부 절차 등은 영리 법인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 익 제외)과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과세취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영리법인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때에 비영리법인만 비과세하면 동일한 수익사업에 대하여 영리법인과 비교관계에서 과세의 형평이 침해되는 한편 비영리법인을 가장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할 필요성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일정한 수익에 대하여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주택조합의 법인세 과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축한 주택을 일반분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위 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6.10.선고 2003두2656 판결).

한편, 원칙적으로 조합원 분양수입은 조합원 자신이 출자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수입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부산고법 2018.7.20. 선고 2018누20238 판결).

(가) 수익사업

①수익사업 개시 신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함께 재무제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수익사업 여부 판단 기준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아닌지 여부는 당해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며 그 사업에서 얻은 수익이 종국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조달에 충당된다 하더라도 그 수익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5.10.선고 90누4327 판결).

③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

- ㉠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일정한 것
- ㉡ 소득세법에 의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㉕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㉖ 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

한편,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업 관련 고정자산 등의 취득 목적으로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기부금 및 출연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의료용역에 대한 대가와 관계없이 무상을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전-2019-법령해석법인-125, 2019.4.3.).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의한 수익사업 과세 이연

① 의의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조달을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위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즉 실제로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손금이 아님에도 비영리 내국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 한도를 초과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불산입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전이라도 미리 손금에 산입하는 대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기간 동안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59249 판결).

③ 대상법인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 단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다.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등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그밖에 고유목적사업 외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690 판결)

한편, 임대업과 의료업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과세기준자문, 법령해석법인-0451,2019.7.31.).

(6) 부동산 등 양도소득

(가) 대상 자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기타 자산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나) 과세방법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부동산이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방법과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비교하여 선택적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이 일정한 조건(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법인세 신고방법: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하는 방법

②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다.

(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 일정한 조합법인은 당기순이익에 의하여 법인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 당기

순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말한다.

조합법인은 일반법인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혜택은 배제된다.

한편,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한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일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 소득은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5.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가. 각사업연도 소득의 개념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법인이 매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으로 원칙적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실무상 기업회계를 기초로 당기순이익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반영하여 세무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나. 익금과 손금의 인식

(1)개요

각 사업연도 소득은 권리 확정주의에 따라 순자산 증가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금전의 수수 여부에도 불구하고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인식 파악한다.

(가)수익의 인식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은 수익획득 과정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교환거래가 나타났을 때 인식한다. 이에 따라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건부 또는 기한부 판매시 손익귀속시기는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이 도래하여 판매가 확정된 날이다.

※공사 선수금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고 정산시점이다.

(국심 2005 전2571, 2006.3.24. 등 참조)

(나)비용의 인식

특정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일한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이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도 손비의 인식은 이익창출활동 과정에 따른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르며 특정의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그 관련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비용은 자산이 소비되는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원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이다.

(2)자산·부채의 평가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시가에 의한다. 따라서 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불산입 항목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평가 차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재고자산은 원가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및 매출가격 환원법 등)과 저가법(원가와 시가 중 낮은 가액)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3)자산 중 가지급금 관련

①세법상 가지급금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등의 대여액을 말한다.

(한편, 기업회계상 가지급금이란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지출이 이미 이루어졌으나 그 지출을 회계처리할 적절한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그 지출금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실무상 경비 등을 지출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내역을 숨기기 위한 경우, 분식결산을 하면서 표시하기 곤란한 금액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②세법상 가지급금 계상 불이익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적정이자 미수취시)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 대손금 손금불산입
- 은행거래 신용도 평가 불리
- 비상장주식 가치 증가요인
- 청산시 대표이사 상여 처분
- 과세당국 불신

③ 가지급금 해결 방안

- 대표자 등 개인 자산으로 채무 상환
- 급여, 상여금, 배당, 퇴직금 등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
- 자기주식 취득, 유상증자 등 자본거래로 처리

나. 익금

(1) 개념

익금이란 해당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수익이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즉, 기업이 특정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인도한 상품 또는 제공한 용역의 총판매가액(매출액)이 수익이다

수익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상품판매나 용역제공 등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자산(현금 또는 현금을 받을 권리)이며 자본을 증가시킨다. 대가로서 유입된 현금과 수취채권의 합계액으로 측정한다.

(2) 익금 산입의 범위

익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수익은 주된 영업에서 발생한 수익이든, 그 외에서 발생한 영업외 수익이든 가리지 않는다.

(가) 손익거래에 의한 익금산입

① 사업수입금액(매출액)

수익발생의 대표적인 거래는 상품,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다.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유입된 경제적 효익이 매출액이 된다. 즉, 상품이나 제품 등 재고자산의 판매금액을 말한다. 다만,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은 매출에서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② 자산의 양도금액

상품이나 제품 등 재고자산 외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

한다. 즉, 토지·건물·기계등 유형자산과 유가증권이나 투자자산 등의 처분대가를 말한다. 한편,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대법원 2011.7.28.선고 2008두5650 판결).

③ 부동산 임대업(주택임대 제외)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추계결정 법인(주택임대 포함)의 부동산임대업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의한 수익

법인이 임대보증금 등을 받으면 순자산의 변동이 없어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보증금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간주임대료 대상 법인은 ㉠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이 있는 모든 법인 ㉡ 영리내국법인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자산총액에서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으로 하면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과다 보유 법인이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④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일시적인 자산의 임대료

⑤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이 주주나 채권자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말하며,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이 주주나 채권자 등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가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항목이므로 익금에 해당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킨 금액이므로 그 원인에 관계없이 익금에 해당한다.

자산수증이익, 영리 내국법인이 받은 정부출연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받은 유가보조금은 익금에 해당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완전히 대가 없이 받은 경우는 물론 시가 보다 낮은 가액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의 차액도 무상으로 취득한 가액이다.(대법원 2007.12.13.선고, 2005두14257 판결).

⑥ 자산의 평가이익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이익과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한 평가이익 등이 익금산입 대상이다.

⑦ 특허권 등 취득, 대여, 양도 관련 익금 산입

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을 당기 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⑦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적립금액

이익처분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업확장적립금 등을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⑧ 기타 수익에 해당하는 것

영업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금, 사채·공채 등의 투자수익, 대여금 또는 예금이나 자금운용에 의해 획득되는 수입이자, 수입수수료 및 잡수입 등의 부수수익, 수입보상금, 수입보험금,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손해배상금 등이 수익에 해당되어 익금에 산입한다.

⑨ 기타 익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동업기업에서 동업자 간에 배분받은 소득금액, 지출 당시 손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환입된 경우 그 금액, 수입한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시 부담한 과세환급금, 세액공제된 외국 법인세액,

⑩비영리법인 익금

- 비영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해산한 경우,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나) 자본거래에 의한 익금산입

① 자산거래와 자본거래의 구분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7091 판결).

※자본거래 유형

- ①유상증자: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금전 등을 받는 것
- ②무상증자 :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

- ③유상감자 : 주주에게 금전 등으로 자본금을 반환하는 것
 - ④무상감자 : 회사가 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결손금을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 한편, 불균등 증자 또는 감자시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② 투자유가증권 수익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 산입된다(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 또한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 매입은 익금산입 항목이다.

③ (불공정한)자본거래로 인하여 분여 받은 이익

- ⓐ 특수관계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등 자본거래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

(다) 의제배당에 의한 수익

①의의

의제배당이란 상법상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얻은 배당소득은 아니지만 법인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에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한다.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

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6126 판결).

② 자본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의제배당금액이란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소멸할 때 그 대가로
받은 재산가액이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주식의 소각·자본금 감소·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
로 인하여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가
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자기주식 소각시점에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 시기에 상관없이 의제배당으로 과
세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각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자본 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 해산한 법인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인 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
액을 초과하는 금액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
는 금액

㉣ 분할합병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
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
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
는 금액

③ 이익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기업회계상 무상주를 받은 법인은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단지 주식의 취득단가를 수정(주주지분의 재분류)할 뿐이다.

그러나 세무회계에서는 무상주를 교부받은 시점에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㉔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등에서 자본금 감소를 결의한 날, 해산의 경우에는 잔여재산 가액확정일,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잉여금의 자본 전입은 주주총회 등에서 자본전입을 결의한 날이 된다.

(3) 익금 불산입

(가) 의의

법인의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거래에 해당되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해당 소득의 성질, 자본 충실화, 이중과세 방지 등에 비추어 과세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이를 익금 불산입이라 한다.

(나) 자본거래에 의한 익금 불산입

자본거래란 법인의 납입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를 생기게 하는 거래 및 잉여금의 처분을 말한다.

잉여금이란 경영활동의 결과로 자본금을 초과하여 기업의 이익이 사내에 유보된 금액을 말한다

① 주식발행초과액

주식발행초과액은 회사의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나 주주의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액 자본준비금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발행가액)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 항목인 채무면제이익으로 본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③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여 생긴 손익),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이러한 감자차익은 감자를 하는 과정에서 주주에게 반환되지 않고 불입자본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출자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④ 합병차익

상법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 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합병차익 = 승계한 순자산가액 - (교부주식의 액면가액 + 합병 교부금)

다만, 합병법인은 비적격 합병으로 비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자산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 순자산 시가 보다 작은 경우에는 합병매수차익이 발생하고 이는 5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즉 합병매수차익 =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시가 - 지급한 양도가액(합병대가) 비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은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게 됨에 따라 합병매수차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므로 합병매수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은 비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시가 등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의 장부가액 보다 클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므로 익금에 산입한다. 즉,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 양도가액(주식의 시가) - 순자산 장부가액

그러나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이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으므로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분할차익

상법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분할차익 = 승계한 순자산가액 - (교부주식의 액면가액 + 분할교부금))

다만, 분할신설법인은 비적격 분할로 분할법인에게 지급한 자산 양도가액이 분할법인 순자산 시가 보다 작은 경우에는 분할매수차익이 발생하고 이는 5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즉 분할매수차익 = 분할법인의 순자산시가 - 지급한 양도가액(분할대가)

그러나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순자산

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므로 분할매수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 분할법인은 비적격분할인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시가 등이 분할 법인의 순자산의 장부가액 보다 클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므로 익금에 산입한다.

즉,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 양도가액(주식의 시가) - 순자산 장부가액

그러나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분할법인이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으므로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 이중거래 조정을 위한 익금 불산입

①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 불산입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익금 불산입한다. 이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그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면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즉,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당기순이익 누적금액인 이익잉여금이 배당금의 재원이 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익금 불산입한다.

익금 불산입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를 함으로써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고 주주 등의 지위에서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등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5두48693 판결).

이에 따라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기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에 대하여는 익금 불산입한다.

※ 지주회사

지주회사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회사이다.

※한편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에 대해서도 지주회사와의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하여 수입배당금의 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하지만 지주회사에 비해서 익금불산입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③ 익금 불산입 적용 제외 수입배당금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받는 수입배당금, 고율의 지주회사의 익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은 수입배당금,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익배당금,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기업 등은 익금 불산입하지 않는다.

한편, 익명조합계약의 경우 내국법인이 출자를 통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그 주주 등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은 익명조합원의 지위에서 출자 당시 정한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할 뿐 주주 등이 받는 배당액 등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익금 불산입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이 아니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5두48693 판결).

(라) 기타 거래의 익금 불산입

① 이월익금

이월익금이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말한다. 전기에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당기에 다시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기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세액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는 지출 당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세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④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할 때 그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예수금의 성질을 갖는 항목이므로 익금 불산입한다.

⑤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본다. 자본충실화 목적에 의한 익금 불산입이다. 다만, 국고보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한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지난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경우 익금불산입을 통해 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⑥ 상품·제품 등 자산의 평가이익

법인은 자산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므로 자산의 평가이익은 장부상 이익으로 미실현 이익으로 익금에 불산입한다.

다만,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증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평가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⑦ 지출 당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환입되는 경우 그 금액

다. 손금

(1) 의의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잉여금의 처분이 손금이 아닌 이유는 잉여금 그 자체가 과세소득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순자산 감소는 법인의 자산이 감소하거나, 법인의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손비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자산의 유출액 또는 부채의 증가액)을 말한다. 즉, 비용이란 기업이 수익을 얻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소비한 자산(상품 또는 현금의 지급 및 현금을 지불할 의무)이며, 자본을 감소시킨다.

비용이란 사업연도 중 기업의 계속적 활동으로 인한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등 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유출액 또는 사용액과 부채의 발생액을 말한다.

(2) 손금 산입 원칙

비용 중 제조원가 성격이 있는 것은 제품원가를 구성하여 당기 판매분은 손금산입하고 미판매분은 차기 이후에 손금 산입한다.

그리고 자산원가 성격은 차기 이후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 손금으로 산입한다.

또한 판매비와 관리비 등 당기에 확정되는 비용 성격은 당기 손익으로 배분한다.

※법인 설립 전에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 비용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손금 산입 요건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금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금 또는 비용으로서 ①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②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9.11.2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는 손금에 산입하나, 업무무관경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일반적인 손금산입의 범위

(가)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기업회계상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손금에 산입되는 상품 등의 매입가액은 매입액에 매입에누리와 매입환출, 매입할인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 밖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등도 손금에 산입되고, 판매장

려금 및 판매수당 등은 사전약정에 관계없이 손금에 해당한다.

한편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은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하여 평가한다. 재고자산 매입 관련 이자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발생시점에 손금에 산입한다. 또한 건설자금이자도 손금산입한다.

(나)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① 매입 또는 자가제조한 자산

① 원칙

취득에 소요된 금액(매입가액+제조가액)과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의 합계액이 손금이 된다. 그 밖의 부대비용으로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이 있다.

유형자산의 경우 취득 시 국·공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② 유형자산 취득과 이자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 관련 지급이자(건설자금이자)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정된다.

③ 장기할부매매에 의한 취득

장기할부매매의 경우 할부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② 교환 또는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가 손금이 된다.

③ 현물출자에 의한 피출자법인의 자산취득은 해당 자산의 시가가 손금이 된다.

④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적격합병·적격분할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비적격합병·비적격분할의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시가를 손금으로 한다.

(다) 재고자산 등의 평가손실

①재고자산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 판매불능

②유형자산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 및 멸실 등에 의한 평가차손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하다.

한편 유형자산은 파손·멸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라) 인건비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제반비용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급여의 성질인 보수·급료·임금·수당과 임시적·추가 급여적인 상여금, 퇴직급여로서의 퇴직금·퇴직위로금·퇴직연금 및 부가적 급여로서의 복리후생비가 있다.

원칙적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비이므로 손금에 산입되나,

과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과다보수 규정은 본질적으로 실질과세 내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확인규정이다(조심 2015 서 5615, 2016.6.14.)

※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는 건설중인 자산으

로 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는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한편, 외국인불법체류자 고용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동 인건비에 대하여는 여권사본, 지급받은자의 수령증 등 객관적인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급여 및 보수 등

㉠ 손금 산입 보수 등

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은 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한 금액, 임원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정한 금액, 또는 임원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즉, 임원의 경영실적, 담당 업무의 성질, 중요도, 소요시간, 책임의 경중, 법인의 재무현황,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서울행정법원 2013.3.15. 선고 2012구합 29240 판결).

또한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조심.2010.12.21. 2010부 2005결정)

㉡ 손금 불산입 급여 등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의제하도록 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 불산입한다.

이사의 보수에는 원금, 상여금과 같은 급여는 물론 그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 처분으로서 손금 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994 판결).

제반사정이란 보수가 법인의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 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당기순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등이 있다.

※ 세법상 임원이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즉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는 자, 의사결정권을 갖고 그 결정사항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자이다.

가령,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회구성원 전원, 청산인, 합명회사 등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 종사자 등이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② 상여금

㉠ 손금산입 상여금

사용인에 대한 상여금은 모두 손금 산입되나, 임원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 내의 상여금(임원보수지급기준상의 지급율)만 손금 산입된다.

※ 상법상 상여금 관련 규정 내용을 보면 이사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 정관에 그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388조)

※임원보수 지급기준

①정관에 규정하고, ②매년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보수한도액 총액 결의, ③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 급여지급기준 구비, ④상여금은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특별상여금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⑤복리후생적 급여인 의료비, 교육비 지원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원보수지급규정상 상여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동종업계, 유사규모 법인의 상여금 지급규모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반드시 그 근거를 명확하게 비치하여야 하며 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임원성과금의 경우 당연히 성과금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성과금지급규정 작성시에는 직책별 성과금 산정방법,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가 모두 반영되어 성과금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성과에 대한 공헌도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손금 불산입 상여금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과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은 실질적으로 이익처분 성격의 금액임에도 마치 정

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면 상여금을 손금 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2017.12.21. 선고 2017두59680 판결)

③ 퇴직금

현실적인 퇴직으로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 산입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임원은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 산입하고,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한도 내의 퇴직급여만 손금 산입한다.

한편, 퇴직금이 기업성장에 기여하는 데 따른 보상이라면 그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맞는 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조심 2018서 3081, 2019.6.26.)

그리고 임원퇴직급여를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1중3362 2011.12.28.)

※현실적인 퇴직

현실적 퇴직이란 임의퇴직, 정년퇴직, 해고, 면직 등과 같은 사유로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실제로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것인 경우에는 일정한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3398 판결).

따라서 임원의 퇴직 직전에 퇴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월급여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상한 경우에는 인상되기 전의 월급여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임원의 퇴직급여가 정당하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특정 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후에도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급여 지급규정인지, 직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급여인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한다.(서이-1455, 2004.7.13.).

※등기임원이 퇴직 후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사전법령해석 법인 2019-562)와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서면 법인 2020-1591, 2020.4.29.)

한편,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계상된 퇴직급여충당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④ 복리후생비

기업회계상 복리후생비는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 성격을 갖는 비용을 말한다.

복리후생비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지와 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손금 산입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복리후생비 항목을 열거하고 그 외의 것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및 부담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및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원의 운영비,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과

견근로자에게 복지와 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등이 있다.

(마) 접대비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즉, 특정인에게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 한도액 범위 내의 접대비만 손금 산입한다

. 접대비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손금산입한다. 업무와 관련된다는 의미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여러 사업의 목적 달성에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란 거래처 및 기타 법인이 접촉하는 상대방 즉,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접대·향응·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2004.4.9.선고, 2003두 7804 판결)

접대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나, 기업의 과소비 조장, 불건전한 접대 문화 만연 등 폐단이 있어 그 지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가 있고 이를 초과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편, 지출한 접대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영수증을 갖추어야 하며, 적격영수증을 갖추지 않은 때에는 해당 접대비를 직접 손금 불산입한다.

※ 판매관리비와 구분

판매관리비는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인이고, 목적이 판매촉진이며 수입금액에서 전액 차감된다.그 지출행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에 해당하고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12.12.선고 2003두6559 판결).

※ 광고선전비: 상품·제품의 판매촉진 또는 공급확대를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지출한 비용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된다.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4.12.선고 2000두2990 판결, 대법원 2010.6.24.선고 2007두18000판결)

(바) 기부금

① 기부금의 개념

기부금이란 법인의 사업과 관계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하다.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손금산입한다.

※대표이사 동창회·향우회·종친회 등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한편,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저가양도),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고가양수)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② 기부금의 구분(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등을 말한다.

㉡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액을 말한다. 당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도 기부금으로 본다.

※ 한편,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국세청을 경유하여 기재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㉔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회사의 법인주주 등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㉕ 비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이란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새마을금고 기부금 등을 말하며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장부와 시가 중 큰 금액이 손금불산입된다.

(5)지급이자 손금 산입

(가) 원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법인의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차입금이란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회사채, 사채, 금융리스채무 등이 있다.

다만, 변칙적인 자금거래의 규제 등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나)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①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란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확인

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 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금전거래 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등을 말한다.

②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비실명채권 등의 이자)

③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 이자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 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건설자금 이자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화를 강제하나 세법에서는 특정차입금 이자만 자본화 대상이고 일반 차입금 이자는 선택적으로 자본화 한다.

사업용 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당해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지급이자 등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즉,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고, 건설완료 자산은 즉시상각의제로 한도내에서 손금 추인된다.

④ 업무무관 자산(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지급이자

비업무용 자산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 또는 보유와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제도의 취지는 기업의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제도의 취지는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않고 계열사나 기업주 등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영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비업무용 자산(업무무관자산)

※법인의 업무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을 말한다.

㉡가지급금

회계상 가지급금이란 실제의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표시하는 일시적인 계정과목을 말한다.

세법상 가지급금이란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을 말한다.

자본금의 가장납입, 매입 또는 경비가 누락되거나 부외경비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임원, 주주 등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대표이사, 임원의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출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가지급금에는 대여금은 물론 구상채권 등과 같이 채권적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5.12.선고 2003두7651 판결).지급의무가 있는 돈을 지급시기 보다 앞당겨 지급한 것도 그 지급시기 까지의 기간 동안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6.27.선고 2016두49525 판결).

한편, 가수금은 대표이사나 주주, 임원이 회사자금의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회사에 불입한 후 인출하여 가는 임시적 항목으로 회사자금이 부족한 경우, 매출누락을 한 경우,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등에 발생한다.

동일인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후의 잔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한다.

⑤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순서

순서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지급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이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①적용요건

업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상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 즉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다.

즉, 인정이자와 실제수입금액과의 차액이 시가의 5%에 상당하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②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미회수 매매대금 상당액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매매대금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적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된다(대법원 2010.1.14.선고 2007두 5646 판결).

③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 처분

한편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년이 되는 날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아)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

①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일정한 배기량의 승용차를 말한다. 가령 승용자동차, 캠핑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의한 승용차, 경비업법에 의한 출동차량, 시설대여업자가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영위법인이 소유·임차한 운구용승용차 등은 제외한다.

② 업무용 승용차 손금 산입 범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상 확인되는 업무사용 비율만큼의 업무사용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운행기록부 미작성시에도 일정금액은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으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손금산입한다. 업무용 승용차는 5년 내용연수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감가상각 의제로 보아 강제상각한다)

한편,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 불산입한다. 다만, 조사 확인방법에 따라 별도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

(자) 세금과 공과금 손금 산입

① 손금에 산입하는 세금과 공과금

㉔ 취득단계에서 부담한 취득세 등은 일단 취득원가로 배분 후 감가상각·처분 시 손금에 산입된다. 그 밖에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손금에 산입한다.

㉕ 수입 시 부담한 관세는 손금인정하되, 취득부대비용은 취득원가로 배분한다.

㉖ 법인 설립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㉗ 공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는 지체상금. 다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은 제외한다.

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㉙ 철도화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㉚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㉛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금

㉜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㉝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협회에 대한 회비(일반회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한다(질의회신, 법령해석법인-1291, 2018.6.28.).

㉞ 무료진료권 등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㉟ 상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영위 법인이 일정한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잉여식품 등의 장부가액

㊱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㊲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점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기타 인지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균등할 주민세 등은 손금 산입한다.

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세금과 공과금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금을 말한다.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외국법인세액, 법인 지방소득세, 가산세 포함 한다),

※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손금에 불산입한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으로 법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과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기타 등록전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불성실 매입세액

㉤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 등의 미납액은 손금 불산입한다.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의 증자 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임의단체 회비, 폐수배출부담금 등)

㉧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공과금은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띄는 것이여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인 이유 등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된다.(대법원 2004.3.18.선고, 2001두1949

판결).

(차) 벌금 등의 손금 산입

벌금 및 과료·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손금 불산입한다. 가령 교통사고 벌과금,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카) 손해배상금

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일정한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타) 자본거래 손금 산입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파) 기타 손금 산입비용

고정자산 수선비, 자산의 임차료,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일정한 교육기관에 지출한 운영비 또는 수당,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으로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것, 광고선전 목적인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으로 연간 3만 원 이내의 금액, 일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은 상여금으로서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임직원의 사망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

하는 일정한 금액,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등은 손금에 산입한다.

※ 임원 또는 직원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6)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 감가상각비 의의

감가상각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른 자산의 효용감소분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간손익에 배분하는 절차를 말하고, 감가상각된 금액이나 비율로 나온 금액을 감가상각비라고 하여 회계상 손금으로 처리한다.

즉,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원가배분과정을 의미한다. 즉, 취득비용을 일정한 기간 비용으로 안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회계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을 추정하여 계속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상각범위내에 해당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감가상각비의 최저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상각범위액 보나 적게 계상상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감가상각의제

다만 일정기간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상각범위액까지는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후감가상계 미계상액 만큼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는 조세감면을 많이 받기 위하여 감가상각비를 일부러 계상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감면시 감가상각 신고조정이 가능하므로 감면시 감가상각부족액은 나중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즉시상각의제

고정자산 수선비 중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개량 등을 위한 수선비 등 즉,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된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되어 시부인계산을 하여야 한다.

(라) 감가상각 대상 자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크게 물리적 실체 여부에 따라 형체가 있는 유형자산과 형체가 없는 무형자산으로 구분된다.

①유형자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유형고정자산(건축물, 차량, 기계 및 장치 등)

②개발비, 특허권, 영업권 등 무형고정자산으로 장기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된다.

한편, 운영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상각자산이고,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상각자산이 된다. 한편, 토지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니고, 기타 서화, 골동품, 조경수 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될 수 없다.

(마) 감가상각 손금 산입요건

①상각범위내

고정자산별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대상자산, 상각방법과 상각범위 내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상각범위는 세법상 인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의 한도액이다.

②상각부인액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상각부인액이라 하며, 상각부인액은 손금에 불산입한다.

③상각방법

세법에서 인정하는 상각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④결산조정 원칙

감가상각의 손금 산입은 해당 법인이 장부상에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즉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㉞ 감가상각 방법

법인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 산입하고, 상각부인액이 생긴 경우에는 그 금액은 손금 불산입한다. 다만 그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생기면 이를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㉟ 감가상각의제와 즉시상각 의제

감가상각 의제란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상각범위까지 상각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결산서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즉시상각 의제란 법인이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적 지출이란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7) 준비금의 손금산입

(가) 준비금의 의의

준비금이란 회사가 장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필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가액으로부터 자본액을 공제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회사 내에 유보하여 두는 금액을 말한다.

즉,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를 미리 공제해 줌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법인세를 유예하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정하는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계약자 배당준비금, 비영리 내국법인이 설립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이 있다.

(나) 책임준비금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다) 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진, 폭동, 원자력 사고 등과 같이 발생확률이 극히 낮아 예측할 수 없는 비경상적인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보·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①개념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준비금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다.

②설정대상 소득

준비금의 설정대상 소득은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사회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상계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④익금산입

다만, 비영리법인이 해산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 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 이와 별도로 비영리법인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을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0.5.28.선고 2018두32330 판결).

(8) 충당금의 손금산입

(가) 충당금의 의의

충당금이란 특정의 손비에 대한 준비를 위해 설정하는 계정을 말하는 것으로 추산에 의하여 그 부담을 그 연도에 속하는 것으로 정한다.

즉, 장래에 예상되는 지출 또는 손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출하지 않았거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 미리 이를 추정하여 장부상에 일정액을 기간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평가성 충당금과 부채성 충당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법에 열거된 충당금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충당금은 손금 대상이 아니다.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충당금으로는 하자보수충당부채, 공사손실충당부채, 수선충당부채가 있다.

(나) 충당금 설정요건

미래의 특정한 비용 지출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예상되어야 하고, 미래의 비용 발생의 원인 사실을 당기에 존재하여야 하며, 미래의 지출금액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평가성 충당금과 부채성 충당금

①평가성 충당금

일정한 자산의 가액에 변동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그 자산계정에 대한 공제계정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감가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이 있다.

당해 가치가 하락되었으나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 보수주의 관점에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적절히 조정해 주기 위한 것이다.

②부채성 충당금

장래 확실히 발생할 손비로서 그 발생원인이 당해연도에 있으나 아직 지출이 안 된 경우 그 준비로서 적립된 것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이 대표적이다

(라)대손충당금 손금 산입

①대손금 의의

법인이 매출채권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그 채권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을 대손금이라고 하고 대손금은 회수불능 채권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만,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손금에 대해서만 손금에 산입한다.

②손금으로 인정되는 주요 대손금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 민법, 상법, 어음·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수표,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파산이란 법원이 파산폐지결정을 하거나, 파산종결결정을 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대손시점은 파산폐지결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다.

한편, 파산선고란 법원이 파산개시를 명하는 결정으로 파산절차의 시작을 말하고 파산종결이 아니므로 대손사유가 아니다.

㉢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채권 자체는 존재하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손금산입]

㉠ 채무자의 파산(배당액의 결정통지), 강제집행(강제집행 완결),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사실상 폐업),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사업의 폐업 여부는 법인의 해산 등기 여부나 관할 세무서의 제적처리와 관계없이 사실판단에 의하여야 한다(법인 22601-3765.1985.12.6,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1098 판결).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

㉢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회수기간이 2년 이상 지난 채권

㉣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화해권고 결정, 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조정)으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법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자산부족으로 그 납부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그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손금에 산입한다(대법원 1987.9.8.선고, 85누821 판결).

※ 법인이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미회수 매출채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대손충당금 설정

대손충당금은 회수불능채권의 추산액으로 손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의 범위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상매출금·대여금 등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④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등

※다만, 할인어음, 배서양도어음,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대손사유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두2256 판결).

한편,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에 대하여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그 대손금을 손금 불산입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자금대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대법원2017.12.22. 선고 2014두2256 판결).

⑤ 대손상각비 손비처리 방법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은 실제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 후 대손충당금 잔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한편,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이 그 후 사업연도에 회수된 경우에는 회수된 날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수불능채권의 입증서류

원칙적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본적지, 최근 및 직전 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채무자 소유 재산 유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 채권조사를 위한 조치,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한 재산조사 내용, 법원의 강제집행불능 조서, 강제집행 후 배당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①퇴직금 지급시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이란 법인의 임직원이 퇴직할 때 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부채로 계상한 충당금을 말한다.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미 손금으로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으면,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차감한다.

②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퇴직연금 부담금이란 임직원의 퇴직 등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법인이 퇴직연금사업자(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연금제도(사외적립)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회사책임형)과 확정기여형(개인책임형)으로 구분되고,

①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전에 정해진 급여수준을 지급할 의무가 법인에 남아 있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운용하는 근로자 전체계좌에 납부하는 부담금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회사에 귀속되며, 근로자는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

②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은 법인이 사전에 정해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운용하는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지며,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추가적인 퇴직급여의 지급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제도하에서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된다. 퇴직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한편,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액은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③ 퇴직연금충당금이 설정된 경우 퇴직금 지급시 회계처리

퇴직연금충당금이란 법인이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운영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 납입하는 퇴직부담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하고, 이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채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퇴직연금충당금은 신고조정사항이므로 결산시 반영 여부와 관

계없이 세무상 손금산입한도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바)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①의의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 다만, 이를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면 법인세가 과세되어 보조금 등을 지급한 효과가 감소되므로 법인세 부담을 이연시켜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로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이 있다.

②일시상각충당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감가상각자산(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등에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이는 추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거나 해당 자산의 처분시 미상각잔액을 익금으로 산입한다.

③압축기장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은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해 계상하는 것이고, 자산 취득시 손금산입하여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으로 산입한다.

(사)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의 일정액과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 자본거래 중 손금 불산입

① 자본거래 중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이익잉여금은 이익 창출을 위한 비용이 아니고 경영활동의 결과인 이익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② 주식할인발행차금, 즉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③ 건설이자 배당금

목적사업의 성질상 2년 이상 그 영업 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개업전 일정한 이자를 배당할 수 있는데 이는 건설이자의 배당이라고 하는데 이는 출자의 반환에 해당 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감자차손(자기주식소각손실)

(10) 기타 손금 불산입

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등을 말하는 것으로 유지비, 수선비, 관리비, 재산세·공동시설세 등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법인의 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 등을 말한다.

②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또는 지출: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또는 건물 등에 대한 유지비 등, 출자임원이나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③ 채고자산, 유가증권, 유형자산의 평가손실

④ 임원·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여비, 교육훈련비

⑤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및 교육훈련비 등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⑥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관련된 비용(대법원 2017.10.28. 선고 2017두51310 판결), 가령 법인이 공여한 뇌물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

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

⑦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⑧ 건설자금이자 손금 불산입

사업용 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지급이자 등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손금불산입한다.

※ 기타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과다경비는 손금불산입한다. 또한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비 중 법정 분담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무형자산의 취득

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품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재료비, 노무비, 무체재산권 설정 관련 비용)을 당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보험료의 세무상 처리

1.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대표자, 임원, 종업원이고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한편,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대표자, 임원,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저축성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대표자, 임원이고 수익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

○손금에 산입된 납입보험료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다.

3. 저축성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대표자, 임원이고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

○종업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6. 각 사업연도 소득의 귀속

가. 의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익금 등이 확정된 날이란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되는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1684 판결).

다만,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는 것이지만, 이와 다른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두6870 판결).

※기업회계에서는 발생주의와 실현주의에 기초하여 기간이익을 산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 과세기간

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을 사업연도라고도 하며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1회계기간을 의미한다. 법령·정관 등에서 사업연도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관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로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이 과세기간이 된다.

법인이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그 분할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분할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까지는 1 사업연도로 본다.

다. 권리의무 확정주의

(1) 의의

일반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현실적인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때를 기다리지 아니 하고 그에 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순자산증감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금전의 수수 여부에 불구 하고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익을 인식·파악하려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이다.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권리, 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2.7.9. 선고 2001두809 판결).

(2) 권리확정주의 취지

이는 장래 수입 여부가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현실적인 수입시점 이전에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자의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즉,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해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여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3) 권리확정의 의미

① 실현가능성

또한 실현가능성은 수익의 발생과정에서 수취하거나 보유한 자산이 일정액의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즉시 상환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 56575 판결).

② 권리의 성숙·확정

과세대상이 되는 어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③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요건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대법원 2005.5.13.선고, 2004두3328 판결).

④소송에 의한 권리 확정

한편,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4.8.선고, 96누2200 판결).

(4) 권리확정과 채권의 회수 가능성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5.13. 선고2004두3328 판결).

다만, 거래 상대방이 사실상 도산하는 등 미수금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면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그 단계에서 소득 발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익금 불산입대상이다.(대법원 2018.3.15.선고, 2017두69366 판결).

(5) 사업개시일 전 손익의 귀속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전 생긴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라. 개별 자산의 손익 귀속 시기

(1) 상품 또는 제품 등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시용판매의 경우에는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표시를 한날, 위탁판매는 그 위탁자산을 매대한 날.

※ 제조법인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전적으로 납품할 제품과 반품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여 대리점 사업자는 주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거래인 경우에는 대리점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01, 2019.1.23.).

(2) 보통거래 방식의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3) 상품 등 외 자산의 양도(부동산,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그 대금을 청산한 날(매매대금을 완납한 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장기 할부 조건으로 상품 등과 그 밖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장기할부매출이란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고 판매 대상 자산을 인도한 다음 날로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장기할부 매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한 날이 되나, 법인이 결산확정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날이다. 다만 중소기업은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회수기준 또는 회수도래기준 적용 가능하다.

(5) 용역 매출의 경우(건설, 제조,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기타 용역)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대비 총공사예정비로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장·단기 불문) 한편,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 등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비상장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① 진행기준(작업진행률)에 의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공사계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다.

한편,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해제로 인하여 실

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인도일에 의하는 경우

중소기업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 등의 경우(결산상 진행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였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인도기준 적용 가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양공사 등 예약매출에 대해 인도기준으로 분양 수익과 분양원가를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인정한다), 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 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작업진행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 매출의 경우에는 완성물의 인도일에 의한다.

※ 기타 일반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산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6) 법인이 수입 또는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①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경우

실제로 지급받는 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정기예금연결 정기금 적금의 경우 정기에 금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통지예금의 이자는 인출일

다만,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 한편, 이자비용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날 또는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이다. 그리고 기간 경과분 이자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한다.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수익에서 제외된 후 나중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③ 채권이자 수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기명채권의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 무기명 채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④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 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⑤ 채권 등의 발행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 등 상당액은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⑥ 기타 저축성 보험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⑦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⑧ 일정한 파생상품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⑨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이자수익과 유사한 것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는 그 상환일

⑩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 계상일

※ 지연손해금의 경우 현금주의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이다(대법원 2002.11.8.선고, 2001두7961 판결).

(7)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

㉠ 원칙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거나 실제로 받는 날에 인식한다.

㉡ 무기명 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은 그 지급을 받은 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은 날,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타 배당의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 의제배당의 경우에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또는 투자신탁의 이익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㉕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때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

(8) 임대료 등의 소득 귀속시기

자산의 임대료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9) 보험료 등의 소득 귀속시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의 귀속 사업 연도는 원칙적으로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7.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소득

(1) 내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즉, 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이 주택 및 별장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한다.

(2) 법인의 추가 납부세액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토지, 건물 등(임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의한 법인세 외에 일정한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추가 납부하여야 대상 자산은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비사업용 토지 또는 주택,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부동산, 투기지역 외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등이다.

※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일정 면적 이하의 건설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비출자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의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8. 미환류 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① 의의

내국법인이 투자, 배당 또는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미환류 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

부하여야 한다.

② 대상법인

- ㉠ 영리 내국법인 중 자기자본 500억 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③ 미환류세액 계산 방법

각 사업연도 소득에 국세 등 환급금 이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투자자산 감가상각분을 가산하고 법인세 등,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법령상 의무적립액, 이월 결손금 공제액,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 등,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연구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 비적격합병(분할)의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을 차감하여 기업소득을 계산한 후에 여기에 일정률을 계산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한다.

과세대상 소득에서 투자금액, 임금증가금액, 배당금액, 기타 등을 차감하여 미환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 의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법인이 청산절차를 거쳐 해산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청산이란 회사의 해산 후에 그 재산적 권리의무를 정리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즉,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때 탈루

되어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그 인격의 종식 단계에서 과세하고, 아울러 물가상승에 의한 자산의 가치증가이익이 청산과정에서의 환가처분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그 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12714 판결).

(1)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2)해산의제

마지막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는 신고기한 만료시에 해산한 것으로 의제한다.

(3)청산절차

①청산인 선임: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②청산인 신고 :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여 한다.

③회사의 재산조사: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채권 신고 절차

⑤잔여재산의 분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완료한 후 잔여재산은 주주에게 분배한다.

⑥청산의 종결 및 등기

청산사무 종결시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편, 청산종결등기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질적으로 종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에 청산은 종결되지 않고, 이 범위에서 법인격은 소멸되지 않고 존속한다.

나. 납세의무자

내국법인만 납세의무를 지며, 외국법인은 납세의무가 없다.

다. 청산소득의 계산

법인이 해산하여 소멸할 때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 청산소득이 된다.

라. 청산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제표, 해산한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첨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마. 폐업신고

한편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행위로 회사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청산종결등기가 없는 한 법인격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영업을 재개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10. 세무조정

가. 세무조정의 의의

기업회계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익은 실현주의를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한다. 반면에 세무회계는 공평과세를 위해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한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 차이를 조정해 주는 것이 세무조정이다.

실무상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법상 각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세무조정에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있다.

나.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 준비금, 각종 충당금,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파산한 주식 발행법인의 주식평가손실,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 등으로 인한 부채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자산의 평가손실, 건설자금이자 손금산입,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차이 등의 사유가 있다.

다. 조정방법

- ① 익금 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수익이 과세 계상되어

있는 경우)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매출누락 등)

② 익금 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음

③ 손금 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조특법상 준비금 등)

④ 손금 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음(업무 무관 비용,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접대비 한도초과 등)

라.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 결산조정

결산조정이란 특정 손비항목에 대하여 기업이 결산과정에서 이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조정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결산조정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상각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신고조정 가능)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 법인세법상 준비금: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한하여 신고조정 가능) ㉦ 대손금(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는 신고조정 사항임) ㉧ 자산의 평가손실 ㉨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2) 신고조정

신고조정이란 장부상에 계상하고 결산을 마친 다음 회사가 결산서에 누락, 과세계상, 과다계상한 경우에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함으로써 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 방법이다. 즉 신고과정에서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및 손금 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 및 익금 불산입 사항을 가감 조정함으로써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마. 외부조정 신고제도

(1) 의의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 등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이행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2) 대상법인

- ①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
- ②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준비금 잔액이 일정액 이상인 법인
- ③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 ④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 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법인

⑥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8. 소득처분

가. 소득처분의 의의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사항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의 내부에 남아 있으면 이를 기업회계상 순자산에 가산하여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하고, 법인외부에 유출되었으면 소득귀속자를 파악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에서 익금산입 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 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이렇게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기업회계에서는 당기순이익이 주주총회에서 이익준비금의 사내유보와 이익배당금의 사외유출로 처분된다.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경정 등 청구,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나. 취지

소득처분은 법인의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함으로써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에 적정을 기하고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다. 소득처분의 종류

소득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보와 사외유출로 나누어

지며, 유보에는 유보와 기타가 있으며,
사외유출은 다시 그 귀속자에 따라 출자자이면 배당으로 출자자인
임원이나 사원인, 임원인 경우에는 상여로, 법인소득이나 개인의 사
업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 그 밖의 것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된다.

(1) 유보(자산과 부채에 대한 처분)

세무조정으로 당기순이익에 가산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
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을 증가
시키는 금액이다.

즉, 기업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무회계상 자산·부채에 차이(일시적
차이)를 발생시킨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이다.

한편, 장부상 자본 보다 세무상 자본이 크면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장부상 자본 보다 세무상 자본 보다 작으면 -유보로 소득처분한
다.

외상매출 누락,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
자 손금불산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보와 -유보는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반대의 세무조정이 필
요)

한편,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
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
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2) 사외유출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에 의한 세무조정 금액이 기
업의 외부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행하는 소득처분이다.

즉, 사외유출이란 법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법인으로부터 유출되

어 제3자에게 귀속됨을 의미한다.

사외유출에 의하여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귀속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외유출은 세무계산상의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시 귀속이 분명한 경우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①귀속이 분명한 경우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소득의 귀속시기는 상여는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배당·기타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된다.

상여, 배당, 기타소득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와 소득자의 추가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②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과의 차액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사외유출 사례

①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불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9.23.선고 2016두40573 판결).

②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5.23.선고 2013두 611 판결)

③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1.13.선고 2007두23323 판결).

④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횡령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횡령 당시 곧바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횡령금 상당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9.7.선고 2016두57298 판결).

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가) 상여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으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가 여기에 해당된다. 기타 현금매출 누락, 지출증빙이 없는 영업활동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등이 있다.

한편,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나) 인정상여

인정상여란 기업에 들어온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즉,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이거나 법인세법 의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익금산입된 소득의 귀속시기를 밝힐 수 없다면 모두 대표자의 상여로 의제하는 처분을 한다. 인정상여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고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따라서 법인등기부상에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또한 부당행위계산이 이루어진 시점의 대표자 즉, 납세의무의 성립시 대표이사가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이 된다.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의 판단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최종결재권을 보유하고 회사의 자금관리 등을 주도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활용한 자는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한다.(즉, 소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처분권이 있어야 한다.)

한편,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각자에게 구분해서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소득처분한다.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할 갑종근로소득세액 상당을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6다 49789 판결).

(다)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경우 소득 처분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한편,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라)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법인은 그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므로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 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다른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판결).

(3) 배당

세무조정 등이 사외로 유출되어 주주(출자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본다. 이 경우 귀속자의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며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에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필요하다.

※한편, 연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으로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4)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가, 사용인, 임원 외에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로 그 소득이 내국 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거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및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이자 중 원천징수세액,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의해 익금산입한 것 중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등이 있다.

(5) 기타

기타란 익금산입, 손금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무회계상 자산, 부채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을 때 행하는 소득처분이다.

9. 합병과 분할시 법인세 과세

가. 합병에 따른 법인세

(1) 합병의 개념

합병이란 어느 법인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법인에 이전하고 이에 따라서 존재했던 1개 또는 수개의 법인을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피합병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① 양도손익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비적격합병의 경우).

한편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주식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소멸주식의 취득가액)이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 대상이다(비적격합병)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대가로 주식교부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교부받은 주식은 피합병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므로 의제배당액이 없다. 다만, 그 밖의 경우에는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의제배당액이 과세된다.

(3)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합병매수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비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매수차익은 5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한편, 법인합병에서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해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일 뿐,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세법상 영업권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8.5.11. 선고 2015두41463 판결).

(4)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

법인세법은 합병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합병에 대하여는 일정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즉, 피합병법인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므로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므로 합병매수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분할에 따른 법인세

분할이란 1개의 법인을 나누어 1개 또는 수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은 다시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존속분할과 분할되는 법인이 소멸하는 소멸분할로 구분된다. 또한 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인 법인과 합병할 수 있으며 이를 분할합병이라고 한다.

(1)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① 양도손익

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

금에 산입한다. 다만,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순자산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으므로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주식의 시가)에서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소멸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비적격 분할)적격분할의 경우 분할대가로 주식교부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교부받은 주식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므로 의제배당액이 없다.

(2)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분할매수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때 분할 매수차익은 5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한다(비적격합병) 다만, 적격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므로 분할매수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

인적분할이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데 반하여 물적분할이란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 교부하는 유형의 분할을 말한다.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법인은 상대방법인 등에 사업의 일부, 즉 자산을 이전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분할법인이 상대방법인 등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적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무분을 분할하는 것

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분할 법인이 받을 분할대가 전액이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인 경우에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8.6.28.선고, 2016두40986 판결).

10.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항목

가. 이월결손금

(1) 개념

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월결손금이란 결손금으로 발생 이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2) 공제방법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20년 이후 발생분은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은 결손금의 발생연도에 관계없이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 때 이월결손금은 공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등이 멸실되어 추계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결손금 소급공제

(1) 개념

결손금 소급공제란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금액을 말하며,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

(2) 대상법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그 합병등기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다.

(3) 환급세액 계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

가. 개요

동업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동업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배분한 손익배분비율 등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동업기업을 실질적 측면에서 도관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업기업은 종전의 과세방식과 동업기업 특례 과세방식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나. 동업기업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 기타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인적회사 성격의 단체를 말한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민법상 조합, 상법상의 합자조합과 익명조합, 특별법상의 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법무법인, 특허법인, 노무법인, 법무사합동법인, 법무법인(유한),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등이 있다. 그리고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다. 동업기업과세특례 신청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예는 설립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라. 동업기업과세특례 내용

(1) 개요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한다.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수동적 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다만,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동업기업이 형식적으로는 법인과 같은 실체적 외관을 갖는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한다.

※배분: 배분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분배: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동업자군

동업자군은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으로 구분한다.

(3) 소득의 구분

동업기업의 구성원인 동업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배분의 기준이 되는 손익 배분비율은 신고한 약정 손익배분비율에 의하고 신고한 약정 손익배분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의한다.

한편,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 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분배일이 속하는 배당소득으로 본다.

(4) 소득의 신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식 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최저한세 제도

최저한세란 조세특례법에 따른 조세감면(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공평과세를 위하여 최소한 일정한도의 세액 만큼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최저한세는 각종 조세감면을 받은 후의 세액과 각종 조세감면을 받기 전의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한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 차이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개인은 자기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한다. 또 법인은 법인세와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있다.

① 개인의 사업주 급여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나 법인의 대표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위임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급여와 상여금이 손금에 산입되지만, 개인대표자는 자신이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② 개인의 사업주의 자금 인출은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아 제한이 없으나 법인의 주주, 대표자등의 자금의 인출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인정이자 등으로 계산한다.

- ③ 재고자산을 자가소비하면 개인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데 법인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
- ④ 가사 관련 경비는 개인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나 법인은 별도 규정이 없다.
- ⑤ 개인은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나 법인은 익금에 산입한다.
- ⑥ 개인은 작물재배업을 비과세하나 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시킨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정의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기존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탐구활동으로 상업화 이전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말한다.

※연구개발 활동 정의

- ①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 ② 과학기술 분야 또는 특정 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제작 및 실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연구단계

연구단계에서는 경상개발비로 당기에 비용처리

3. 개발단계

개발활동의 정의요건인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개발비의 인식요건에 모두 부합하면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방법으로 손금에 산입. 다만, 개발단계에서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비는 당기비용 처리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가. 부설연구소 인원의 인건비 중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임원과 임원특수관계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나. 연구소 직원의 DC형(확정급여형)퇴직연금불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 연구인력에 대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